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4. 11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기획전략과]

제안 설명서

설 명 자: 기획전략과장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을 통합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약칭: 지방분권균형발전법)」이 시행(2023. 7. 10.)됨에 따라,
- 우리 구에서도 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」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개편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등을 정비하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·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.

□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,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,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그리고,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6조 ~ 제8조에서는 위원 임기 등 위원회 구성·운영, 회의 소집 및 통지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,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 법령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.

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4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4년 10월 29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·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4113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4. 11. 6.
제출자: 달서구청장
(기획전략과장)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을 통합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(‘23. 7. 10. 시행)됨에 따라,
- 나.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·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(안 제명)
- 나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다.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(안 제3조)
- 포럼, 세미나,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지원
 -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 등의 추진 및 지원
 -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·공공기관 등의 유치
 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라.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안 제3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-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마. 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6조)

-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
- 당연직 위원 구성, 위원의 임기·연임에 관한 사항

※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67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외

바. 회의 소집·통지, 간사 등에 관한 사항, 운영세칙(안 제7조~제8조)

3. 개정조례(안)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24. 10. 2. ~ 10. 22.)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다.

제3조(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포럼, 세미나,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지원
2.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 등의 추진 및 지원
3.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·공공기관 등의 유치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지방시대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·조정

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제3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당연직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자치행정 담당 국장으로 한다.

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전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는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8조(운영세칙)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협의회 심의·의결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·의결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위촉되어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.

【관 계 법 령】

□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514호, 2024. 7. 4., 타법개정]

제67조(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, 시·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[시행 2024. 7. 10.] [대통령령 제34657호, 2024. 7. 2., 타법개정]

제67조(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
2.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3. 해당 시·군·구 지방의회 의원
4. 해당 시·군·구 공무원

5.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

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⑤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【현 행 조 례】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[시행 2017. 5. 22.]

[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228호, 2017. 5. 22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자치분권”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,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방향)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, 시행,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, 자치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4조(책무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.

제5조(추진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2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한다.

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
2.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
3.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
4.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자치분권협의회 설치)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·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(개정 2017. 5. 22)

③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학계, 언론계, 법조계, 시민사회계, 지방의회,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

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(개정 2017. 5. 22)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17. 5. 22)

제7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17. 5. 22)

1.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
2.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
3.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
4.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(의장의 직무 등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17. 5. 22)

제9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(개정 2017. 5. 22)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7. 5. 22)

제11조(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(개정 2017. 5. 22)

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개정 2017. 5. 22 조례 제122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